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1. 27 선고 2020가단142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000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7. 2. 1. 접수 제1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근거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박동규

별지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'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옳기로 보인다.